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6. 11. .
발 의 자	한성희의원 외 6명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 연월일 2016. 11.

발 의 자 한성희, 안주찬, 김태근
김복자, 김인배, 박세진
안장환

1. 제안이유

- 구미시의회의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함.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지역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함.
 - 숙박비(1야당) 46,000원을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조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시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비고 :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 KTX 운행구간에는 KTX 철도 운임 지급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기 준 액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
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
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
· 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
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
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